

[별표 2] <개정 2015.12.10.>

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대상, 발령주체 및 대상 수질오염물질

(제28조제2항 관련)

1. 조류경보

가. 상수원 구간

대상 수질오염물질	발령대상	발령주체
남조류 세포수	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조사·측정하는 하천·호소 중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·호소	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

나. 친수활동 구간

대상 수질오염물질	발령대상	발령주체
남조류 세포수	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조사·측정하는 하천·호소 중 수영, 수상스키, 낚시 등 친수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·호소	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

2. 수질오염감시경보

대상 수질오염물질	발령대상	발령주체
수소이온농도, 용존 산소, 총 질소, 총 인, 전기전도도, 총 유기탄소, 휘발성유기화합물, 페놀, 중금속(구리, 납, 아연, 카드뮴 등), 클로로필-a, 생물감시	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실시간으로 수질오염도가 측정되는 하천·호소	환경부장관